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 경 기 도



수신 경기도 내 나무병원 대표 귀하  
(경유)

## 제목 나무병원 등록 안내

1. 생활권 수목진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자격 제도가 2018년 6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2.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은 2018년 6월 28일자로 법인이 일괄 취소되며, 수목진료 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6월 28일까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새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개정된 「산림보호법(18.6.28시행)」부칙 제3조, 동법 시행령개정(안) 별표 1의6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신청할 경우 제출 자료가 간소화 되며 수목진료 업을 중단 없이 실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출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조건 : 붙임 안내문 참조

• 제출자료

나무병원등록신청서(붙임참고), 법인인감증명서, 나무병원 재등록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자격증사본과 근무경력 증빙자료(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제출기간 : 2018. 06. 20까지

### □ 신청서 접수

구분	법인 등록 주소지	접 수 처	접수방법
경기남부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우16444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원녹지과 ☎ 031-8008-5484 / 김시내 주무관	우편(등기) 또는 방문 * 우편은 6.20 도착 요망
경기북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우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산림과 ☎ 031-8030-3555 / 민을수 주무관	"

- 붙임 1. 나무의사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 제도안내서 1부.  
2.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1부. 끝.



# 경기도지사



주무관 민을수 산림자원팀장 박주연 산림과장 전결 2018. 6. 11.  
김영택

협조자 주무관 김시내 공원정책팀장 엄태균 공원녹지과장 이성규

시행 산림과-13428 (2018. 6. 11.) 접수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30-3565 팩스번호 031-8030-3579 / [eulssu@gg.go.kr](mailto:eulssu@gg.go.kr) / 부분공개(6)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

법인	명칭(대표자)	
	등기번호(설립일)	
	소재지(전화번호)	자본금

기술 인력	나무 의사	성 명	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번 호
기술 인력	수목 치료 기술자	성 명	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번 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 3. 기술인력명단 및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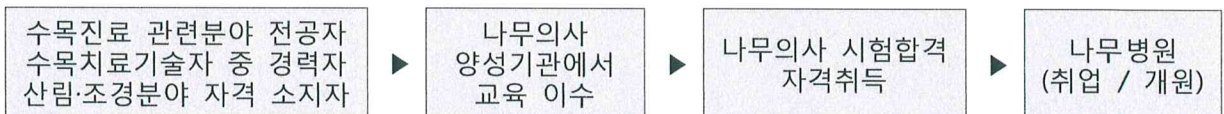
# 6월 28일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 제도 안내

## 1. 추진배경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 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
  - 수목의 공익기능(휴식, 경관, 생물다양성 등) 및 도시민의 쾌적한 녹지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권 수목병해충 관리의 중요성 증대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 산재
  - \* 실태조사 결과('15) : 비전문가의 수목병해충 방제(80%), 부적정 약제사용(69%)
-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 2. 기본방향

- 국가양성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생활권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를 수행토록 체계 정비



\*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에서 교육이수 시 자격 부여

## 3. 달라지는 주요 내용

- ('18. 6. 28)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된 산림보호법 개정(안) 시행
  - 현재는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를 보유한 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실시하거나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나,
  - '18. 6. 28일 이후부터는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음(나무의사가 진단·처방시 수목치료기술자가 처치는 가능)

## □ 나무병원 등록 조건 변경

구분	현행	개선('18.6.28이후)
근거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운영형태	산림사업법인의 한 분야로 운영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
기술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보호기술자(공인민간자격)</li> <li>• 식물보호기사 (농작물분야 유사자격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나무의사</b> 1단계 :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2단계 : 국가 자격시험</li> <li>• <b>수목치료기술자</b> 1단계 :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li> </ul>
자본금	1억원	1억원
별금규정	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18.6.28이후부터 나무병원과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도시림 조성 등)의 인력공동 활용이 불가

## □ 법령 개정(전)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기술자의 경과 규칙

### ○ 산림보호법 부칙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28일 기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나무병원 재등록에 관한 사항

- 기술자의 경과 규칙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나무병원은 06월 20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 시 개정된 법령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재등록됨.
- (관련서류) 나무병원등록신청서(붙임참고), 법인인감증명서, 나무병원 재등록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자격증사본과 근무경력 증빙자료(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등
- 06월 20일까지 관련서류를 미제출하는 모든 나무병원 6월 28일 나무병원 법인 등록이 자동 해지됨.

**개정된 법령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자 등록조건**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 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사무실
2종 나무병원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 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나무의사 나. 수목치료기술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비고

-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8일 폐지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자본금: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사무실: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 나무의사 시험 응시 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다만,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학과를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 나무의사 관련 홍보 리플렛

www.forest.go.kr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 나무의사 제도의 모든 것



Q1. "나무의사가 무엇인가요?"



나무의사는 알 그대로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예요.  
(산림보호법 제21조제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Q2. "나무의사는 왜 필요한가요?"



코로나수부터 동해 곰팡이까지 주위를 보면 나무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우리 생활과 더 가까운 나무를 예방부터 치료까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Q3. "나무의사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산림보호법』 개정안(10.12.27) 공포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Q4.**  
 “나무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양성기관과 세부 교육과정, 응시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일에 맞춰 추진, 공개될 예정입니다.

**Q5.**  
 “나무의사와 함께 도입되는 수목치료기술자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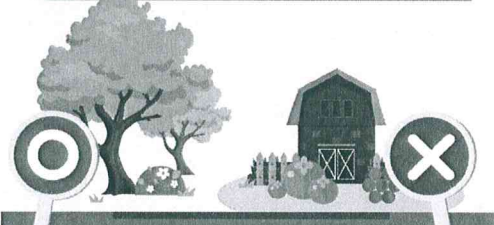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실제로 나무에 예방과 치료를 실행하는 전문가인데, 양성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Q5-1.**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진단·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의사는 교육이수 후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하지만, 수목치료기술자는 일정교육학점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Q6.**  
 “나무의사의 진단·처방등을 받아야 하는 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은 물론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Q7.**  
 “수목의 소유주도 수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를 통해야 하나요?”



아니요. 수목의 소유주는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Q8.**  
 “이미 나무병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은 폐지되고,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Q9.**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18.6.28) 1년 이상 나무병원에 종사하면 법이 시행된 후 5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Q9-1.**  
 “기존 나무병원 자격 기준인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입)기사 등의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입)기사 등 기존 기술자격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의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Q10.**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시 국민 의견 수렴 기회가 있나요?”



주요 절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